

국회의원(서명옥) 징계안

의안 번호	17196
----------	-------

요구연월일 : 2026. 3. 3.

요 구 자 : 이해민 · 최민희 · 정동영
김 현 · 황운하 · 김선민
김재원 · 김준형 · 박은정
백선희 · 서왕진 · 신장식
정춘생 · 차규근 · 강경숙
김우영 · 노종면 · 이정현
이주희 · 이훈기 · 조인철
한민수 · 황정아 · 손 솔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한창민 · 용혜인 의원
(29인)

주 문

국회의원(서명옥)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하였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야 할 공동의 규범이 있음. 또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에서도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명옥을 포함한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2월 27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중 손팻말과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반입하여 본회의장 발언대 단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함. 이는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에 따른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을 무시한 행위임.

다. 국회의원 서명옥은 당시 「국회법」 위반 행태를 기록하던 이해민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이 들고있던 손 피켓으로 이해민 의원을 가격함. 이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명옥 의원의 가해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형법」 제260조(폭행)에 규정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켓이라는 물건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성립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

라. 서명옥 의원이 폭행의 명분으로 내세운 '초상권'은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에 따라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의 공적 특성상 인정될 수 없는 주장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내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점거 농성 상황을 채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임. 따라서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사실상 서명옥 의원 본인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동료 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력으로 억압한 것임.

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명옥은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음. 이는 공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

바. 국회는 2012년 국회내 폭력근절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본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통한 민주적 국회운영을 천명하였음. 이번 서명옥의원의 동료의원 폭행 사건이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선진화된 국회운영을 역행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이를 통해 향후 국회 내 더 큰 폭력을 막고 「국회법」이 규정한 본회의장내 질서유지라는 당초 국회선진화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사.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서명옥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에 국회의원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서명옥 의원의 소란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국회법」 제155조제8호 및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